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음반제작업 등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로 간소화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5336호)

2025.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Ⅰ. 제안경위 ·····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Ⅲ. 검토의견 ····· 2

1. 음반제작업 등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간소화
(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 2

Ⅰ.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정 부

나. 제 출 일: 2024. 11. 7.

다. 회 부 일: 2024. 11. 8.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Ⅲ. 검토의견

1. 음반제작업 등의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간소화 (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가. 개정안 요지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를 이른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간소화함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20조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② (생 략)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삭 제>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
제2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 받은 ----------.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생 략)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	<삭 제>

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 받은 경우 ----------.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	④ ---------- 제18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에 따라 등록을 한 노래연습장업에 관하여 제1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
⑦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까지의 기간 동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 시장·군수·구청장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를 받거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상속인에 대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또는 신고로 본다. ⑧·⑨ (생 략)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신고를 수리한 날----------. ⑧·⑨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신고’는 사인이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고의 실질적 내용과 성격에 따라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구분됨.

– 「행정기본법」 제34조[1]에 따르면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실질적 검토를 거쳐 신고를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행정절차법」 제40조[2]에 따르면 ‘수리가 필요 없는

1)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2)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봄.

○ 지난 2016년~2018년 정부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의 경우 법령에 별도의 추가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①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거나 ②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신고인에게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기간 내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현행법 제16조[3]제1항에 규정된 음반·음악영상물제

---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제작업자와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배급업자는

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제21조[4]에 따른 변경신고 및 제23조[5]에 따른 지위 승계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해당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영업의 승계 등)** ① 제16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려고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시설·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기구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 ⑨ (생 략)

○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영업신고의 경우 별도의 수리행위가 없이도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는 '신고민원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이들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임.

○ 현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및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 승계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실질적인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현행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도 특별히 위 업종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거나 그 신고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이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전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376